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3. 11. 20.

다. 상정일자: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12.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5년)을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입법예고 : 2023. 10. 5. ~ 10. 25. (제출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가.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5년)을 연장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개정 내용

- (안 제2조의2) 존속기한 연장하는 내용임.
- (안 제8조) 불필요한 규정 삭제하는 내용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회계의 구분)에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5년)이 2023.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 12. 31.로 연장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